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노및축산폐수의처리관련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40
----------	------

제출일자 : 2004. 9.

제 출 자 : 종로구청장

1. 개정이유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 입법·시행되면서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로 포함되었기에 법령에 맞게 우리구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상위법령 변경(생활보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문수정 및
수수료 감면규정 변경 :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1999.9.7 제정)

나. 예산조치 : 비 예산사업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생략
-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0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하게 할 때에는 지역책임제에 의한 봉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2개 이상의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허가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자가 없거나 허가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u>그렇하지 아니한다.</u></p>	<p>제10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p> <p>-- <u>그렇하지 아니하다.</u></p>
<p>제16조(수수료의 감면) <u>구청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u></p> <p>1. <u>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남부의무를 지는 경우</u></p> <p>2. <u>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3. <u>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제16조(수수료의 감면) <u>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남부의무를 지는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1조에서 규정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u></p>